

## “어린이집 특성에 맞는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영유아와 부모, 보육교사가 원하는 휴게시간 보장 방안은 무엇인가?

어린이집 현장은 당장 7월1일부터 의무 적용하여야 하는 휴게시간으로 대혼란에 빠져있다. 보건복지부는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6천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는 예산 확보와 근무 중 휴게시간 보장을 시범 적용한 결과를 토대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완화하는 등의 지침을 개정 하였다.

그러나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휴게시간 대책이 현실적으로

영유아의 잘 자랄 권리를 침해하고,

부모에게는 양육에 대한 불안감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도 눈앞의 아이와 산적한 일거리를 옆에 두고 맘 놓고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밝힌다.

첫째, 7월1일 부터 휴게시간 의무적용을 위한 6천명의 보조교사 배치로는 전국의 20만 보육교사가 제대로 휴게시간을 갖기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둘째, 7월1일부터 기존의 보조교사와 어린이집에 추가 배치되는 보조교사는 근로기준법 준용을 위한 휴게시간 대체를 위함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보조교사 배치 본연의 목적인 교사의 과중한 업무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은 더욱 멀어져 감을 개탄하며, 어린이집에 적합한 휴게시간 방안을 마련하라.

셋째, 보육교사 휴게시간을 위하여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늘리고, 담임교사가 아닌 보조교사가 영유아를 돌보는 것에 대하여 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과연 보육교사는 보육과정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는가?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영유아와 부모, 보육교사의 행복한 권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보육교직원 휴게시간에 대한 예외법령을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어린이집에 담임교사 외 종일제교사를 배치하라.

2018년 6월 25일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교직원 일동**